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6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김석기 · 임종득 · 김 건
김종양 · 이만희 · 김기현
김민전 · 권영진 · 이현승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현행법상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무기간은”을 “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복무기간”을 “복무기간 및 임용기간”으로 한다.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

제31조의2의 제목 중 “복무기간의”를 “복무기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복무기간에”를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을 재직기간에”로, “복무기간”을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으로 한다.

제48조의3의 제목 중 “복무기간의”를 “복무기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복무기간이”를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전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시행 당

시 재직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략)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u>복무기간</u> 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 ----- <u>기간</u> 은-----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 ----- ----- ----- ----- ----- ----- -----.
1. 제2항에 따른 <u>복무기간</u>	1. ----- <u>복무기간</u> 및 <u>임용기간</u>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 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 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재해 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 ----- ----- ----- ----- ----- ----- ----- ----- -----.
--	---